

# 인천광역시 공항공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 10. 19(월)

건설교통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9. 9. 28.

나. 제안자 : 노경수 의원 외 32인

다. 회부일자 : 2009. 9. 28.

라. 상정일자 : 2009. 10. 12(제177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설명 : 노경수 의원
- 검토보고 : 건설교통전문위원 김동호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가. 제안이유

- 인천대교 개통 예정(2009. 10. 23)에 따라 인천대교를 포함한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영종·용유 등 지역주민의 이동 노선을 다양화하고,
- 배기량 1,000cc이하의 경차에 대한 추가 지원으로 경차 사용을 권장하여 정부의 저탄소·친환경 정책에 부응하고자 하며,
- 지원기간을 영종지역 내 인구 유입이 시작되어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영종 하늘도시 1차 입주 예정시기를 감안, 2013년 3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지역주민의 통행료 부담을 줄이려 하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지원대상에 “인천대교”가 추가됨에 따라 제명을 「인천광역시 공항공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자 함.
- 통행료의 기준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북인천영업소)” 왕래시 납부하는 요금으로 하고, “서울 포함”조항을 삭제하여 확대 해석으로 인한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2조)
- 지원대상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로 인천대교를 추가함.(안 제5조)
- 지원기준을 확대하고, 통행료 납부 기준을 마련함.(안 제6조)
  - (1) 지원기준을 배기량 1,000cc이하의 경차의 경우 1세대당 1대에 한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함.
  - (2) 1일 왕복1회 감면횟수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중 한 곳으로 한함.
  - (3) 감면대상차량이 인천대교를 통과 할 경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기준으로 하여 초과 금액은 납부하도록 함.
- 통행료 지원기간을 당초 2010년 3월 31일에서 영종하늘도시 입주시기를 감안하여 2013년 3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부칙제2항)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본 조례 개정안은 중구 영종과 용진군 북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북인천 영업소를 통과할 경우에 종전에는 1가구 차량 2대 이내에서 요금 지원을 받았으나, 인천대교가 10. 19일에 개통됨에 따라 주민들은 공항공속도로나 인천대교를 자유로이 이용하되 기존의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를 기준으로 감면을 받고 추가되는 요금은 이용 주민이 납부토록 되어 있음.

○ 세부내용을 보면

첫째, 조례의 명칭을 인천광역시 공항공속도로 통행료 지원조례에서 인천광역시 공항공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며

둘째, 차량 지원 기준에 있어 1,000 CC 미만의 경차는 1세대당 1대를 추가로 지원하는 근거를 두었으며(조례안 제6조 1항)

셋째, 감면횟수는 종전과 같이 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로 하되 공항공속도로와 인천대교 중 한곳에만 적용하고(조례안 제6조2항) 감면대상차량이 인천대교를 통행할 경우 공항공속도로 이용 금액 기준으로 감면을 받고 초과되는 요금은 이용자가 납부토록 하였고(조례안 제6조3항)

넷째, 동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0년3월31에서 2013년 3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임.

- 영종지역이 인근의 강화나 영흥지역과 달리 이용객들이 과도한 통행료 부담을 안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통행료 지원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지역 발전에 일익을 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영종대교를 포함한 인천국제공항 진입도로와 인천대교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안긴 원인 제공을 하고

인천시는 주민들의 부담을 떠맡는 형태의 현행 요금 체계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는 송도와 청라 영종 경제자유구역의 삼각지대를 연결하는 중요 기반 시설이며 동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국책사업을 총괄하는 국가, 시,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시행자들이 연대하여 통행료를 최소화하는 대안을 강구하고 각종 개발이익을 기반시설 구축비로 환수하는 등의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질 의 >

###### ○ 성용기 위원

- 국가적으로 공항 등 기반시설이 주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건설되면서 섬에 거주한 주민들은 통행료 감면에 대한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 답 변 >

###### ○ 건설교통국장 홍준호

- 현재 영종지역 인구가 3만명 내외로 지원을 할수 있으나 영종하늘도시 등 각종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약 1,000억원정도의 과중한 재정부담을 해야함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영종 미개발지역에 대한 개발이익금으로 통행료 지원 및 통행료 가격인하 등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영종 미개발지역에 대한 택지개발 및 지상개발 이익금으로 인천지역 주민 대상으로 통행료 지원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음

2014년에 영종 하늘도시 입주가 이루어져 통행료 기간을 2013년까지 단서조항을 한 것이며 경차부분은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나 부칙중 공포한 날부터 지원하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 신공항하이웨이(주)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포한 날로부터 지원을 한다는 것은 무리임

##### < 질 의 >

###### ○ 박승희 위원

- 통행료는 얼마로 산정될 것 같은지?

##### < 답 변 >

###### ○ 건설교통국장 홍준호

- 19일 0시부터 인천대교가 개통되므로 이번주 내로 발표될 것임 추정으로 한 6천원 내외로 생각함

< 질 의 >

○ 이재호 위원

-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는 인천시 영종주민의 의지로 들어선 것이 아님. 지방재정으로 통행료 지원을 감당하기 어렵다.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대책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 당당히 요구하여야 함?

< 답 변 >

○ 건설교통국장 홍준호

-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질 의 >

○ 이은석 위원

- 한가구 지원에서 한세대로 변경한다면 2배이상의 재정이 증가 될 수 있다. 검토를 하셨는지?

< 답 변 >

○ 건설교통국장 홍준호

-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다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지 않음

## 5. 토론요지

가. 찬성 : 없 음

나. 반대 : 문희출, 강문기, 허식, 노경수, 성용기, 이재호, 이은석, 박승희 위원

## 6. 수정안 요지

- 안 부칙 제1항의 시행일에 있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전원찬성 : 8명)

## 8. 기타 특이사항

- 없 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인천광역시 공항공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공항공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부칙	부칙
	<p>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3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p>	<p>② (개정안과 같음)</p>



##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행료”라 함은 영종·용유지역 등 주민이다음 각 호의 도로를 통과하여 인천을 왕래하는 때에 납부하는 요금을 말하며, 제1호의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1.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북인천 영업소)
2. 인천대교(인천대교 영업소)

제5조제1항 중 “주민등록을 필하고”를 “주민등록을 마치고”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북인천영업소”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또는 인천대교”로 하며, “주민이 소유하는 자가용 차량”을 “주민이 소유한 자가용 차량”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1가구”를 “1세대”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배기량 1,000cc이하 경차의 경우 1세대당 1대에 한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감면횟수는 감면대상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로 하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중 한 곳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감면횟수를 초과한 차량은 정상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감면대상차량이 인천대교를 통과 할 경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기준으로 하고, 초과되는 요금은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중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통행료”로 한다.

#### 부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3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를</u>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행료”라 함은 영종·용유지역 등 주민이 <u>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북인천 IC (북인천영업소)를 통과하여 인천 (서울 포함)을 왕래하는 때에 납부 하는 요금을 말한다.</u></p>	<p><u>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u>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를</u>----- ----- ----- ----- -----.</p> <p>제2조(정의) ----- ----- <u>다음 각 호의 도로를 통과하여 인천을 왕래하는 때에 납부하는 요금을</u> <u>말하며, 제1호의 요금을 기준으로</u> <u>한다.</u></p>

현행	개정안
<p>제5조(지원 대상) ① 인천광역시 중구(영종도, 용유도, 무의도, 잠진도, 실미도를 말한다) 및 옹진군(북도면을 말한다)에 <u>주민등록을 필하고</u>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p> <p>② 제9조에 의한 업무협약에 따라 시장과 체결한 법인으로부터 감면 대상차량임을 증명하는 감면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u>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북인천영업소를</u> 통과하는 주민이 소유하는 자가용 차량으로 한다.</p> <p>③ (생략)</p> <p>제6조 (지원 기준) ① <u>1가구에</u> 차량 2대 이내로 지원한다. 이 경우</p>	<p>1. <u>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북인천영업소)</u></p> <p>2. <u>인천대교(인천대교 영업소)</u></p> <p>제5조(지원 대상) ① ----- ----- ----- ----- <u>주민등록을 마치고</u> -----.</p> <p>② ----- ----- ----- -----<u>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또는 인천대교를</u>----- <u>주민이 소유한 자가용 차량</u>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지원 기준) ① <u>1세대</u>----- -----</p>

현행	개정안
<p>차량 1대에 대하여 4인 이내로 한다. <u>〈단서 신설〉</u></p> <p>② 감면횟수는 감면대상차량 1대당 1일 <u>왕복 1회로 한다.</u> 이 경우 감면횟수를 초과한 차량은 정상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p> <p>③ <u>〈신설〉</u></p> <p>제9조(업무협약체결) 시장은 통행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u>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u>를 관리하는 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p>	<p>-----</p> <p>--. <u>다만, 배기량 1,000cc이하의 경차의 경우 1세대당 1대에 한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다.</u></p> <p>② -----</p> <p>--- <u>왕복 1회로 하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중 한 곳에만 적용한다.</u> -----.</p> <p>③ <u>감면대상차량이 인천대교를 통과 할 경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기준으로 하고, 초과되는 요금은 납부하여야 한다.</u></p> <p>제9조(업무협약체결) -----</p> <p>-----</p> <p>-----<u>통행료</u>-----</p> <p>-----</p> <p>-----.</p>